

1. 개정이유

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중 국방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이 방위사업협의회 및 후속 회의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응시자격 변경 및 부대 외 기관에서도 국방 자격검정 시행이 가능하도록 문구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응시자격 변경 및 자구 현실화

- 1) 국방사업관리사 종목의 응시자격 기준을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특별교육과정에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으로 변경
- 2)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방대학교에서 방위사업교육원으로 변경되면서 부대 외 기관에서도 국방자격검정 시행이 가능하도록 일부 단어를 수정하여 현실 반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3조의7에 제1항, 제2항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항의 “부대(이하 이 조에서 “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”라 한다)”를 “부대 및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국방자격검정실시기관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3에 국방사업관리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		응시자격 기준
국방사업 관리사 (무기체계,, 정보체계)	1급	<u>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</u> 이수하고,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2급	<u>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</u> 이수하고,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 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3급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. <u>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</u> <u>이수한 사람</u> 2.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.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자격증을 취득 한 지 5년 이내인 사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3조의7(국방자격검정의 실시)	제83조의7(국방자격검정의 실시)
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<u>부대(이하 이 조에서 “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”라 한다)를</u>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	① ----- ----- ----- 부대 및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국방자격검정실시기관”이라 한다)을--- -----.
②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<u>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의 장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국 방자격검정실시기관의 장 ---- -----.
③ <u>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의 장</u> 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③ <u>국방자격검정실시기관의 장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.